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2008 7. 3.)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중복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 건축채정 운영에 따른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다양한 국가이양사무 및 신규 사무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국가이양 사무 및 신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디자인과 · 공영개발과 · 도시미관과 및 여권팀 · 한울빛분관팀 등을 신설하고, 시 · 구청 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원을 상계 조정함.

○ 정원조정 현황

•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계	집 행 기 관						의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정 원	2,100	2,069	852	102	50	681	384	31
조 정	2,056	2,024	940	143	73	481	387	32
증·감	△44	△45	+88	+41	+23	△200	+3	+1

• 직렬별·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제외)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정원	1,729	15	113	376	565	423	237
조정후	1,712	15	110	370	564	417	236
증·감	△17	-	△3	△6	△1	△6	△1

- 기능직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정원	351	11	41	64	102	133
조정후	324	11	42	63	92	116
증·감	△27	-	+1	△1	△10	△17

- 별정직

구 분	계	5급	6급	7급
현정원	9	1	3	5
조정후	9	1	3	5
증·감	-	-	-	-

○ 예산수반사항 : 15억 6천 493만 3천원 감소

(단위: 천원)

구분 \ 직급별	계	일 반 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변동정원	△44	△17	△3	△6	△1	△6	△1
인건비	△1,564,933	△788,309	△199,284	△323,640	△44,354	△196,578	△24,453

구분 \ 직급별	기 능 직				
	소계	7급	8급	9급	10급
변동정원	△27	+1	△1	△10	△17
인건비	△776,624	+46,499	△41,205	△348,860	△433,058

※ 직급별 기준

- 일반직 5급 66,428천원, 6급 53,940천원, 7급 44,354천원, 8급 32,763천원
9급 24,453천원
- 기능직 7급 46,499천원, 8급 41,205천원, 9급 34,886천원, 10급 25,474천원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이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함.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토론내용과 같음.

나. 찬성토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토론내용과 같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05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02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초과현원 44명에 대하여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3호
의결 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2008 7. 3.)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중복 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다양한 국가이양사무 및 신규 사무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이양사무 및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디자인과 · 공영개발과 · 도시미관과 및 여권팀 · 한울빛분관팀 등을 신설하고, 시 · 구청 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원을 상계 조정함.

○ 정원조정 현황

•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계	집 행 기 관						의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정 원	2,100	2,069	852	102	50	681	384	31
조 정	2,056	2,024	940	143	73	481	387	32
증·감	△44	△45	+88	+41	+23	△200	+3	+1

• 직렬별·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제외)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정원	1,729	15	113	376	565	423	237
조정후	1,712	15	110	370	564	417	236
증·감	△17	-	△3	△6	△1	△6	△1

- 기능직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정원	351	11	41	64	102	133
조정후	324	11	42	63	92	116
증·감	△27	-	+1	△1	△10	△17

- 별정직

구 분	계	5급	6급	7급
현정원	9	1	3	5
조정후	9	1	3	5
증·감	-	-	-	-

□ 예산수반사항 : 15억 6천 493만 3천 원 감소

(단위: 천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변동정원	△44	△17	△3	△6	△1	△6	△1
인건비	△1,564,933	△788,309	△199,284	△323,640	△44,354	△196,578	△24,453

직급별 구분	기 능 직				
	소계	7급	8급	9급	10급
변동정원	△27	+1	△1	△10	△17
인건비	△776,624	+46,499	△41,205	△348,860	△433,058

※ 직급별 기준: 일반직 5급 66,428천원, 6급 53,940천원, 7급 44,354천원,
8급 32,763천원, 9급 24,453천원
기능직 7급 46,499천원, 8급 41,205천원, 9급 34,886천원,
10급 25,474천원

□ 첨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05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02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초과현원 44명에 대하여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단위: 명)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 고용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4% 이내	12%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 이내	14% 이내	20% 이내	30% 이내	32% 이상

3.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 이내	34% 이내	39% 이내	18% 이내	2% 이내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56	2,056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712	1,712					
2급	1	1					
4급	14	7	1	3		3	
5급	110	40	3	9	2	19	37
6급 이하	1,587	1,587					
별정직 계	9	9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8	8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8	8					
지도관							
지도사	8	8					
기능직 계	324	324					

(현행 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문개정 1999. 09. 08 조례 제1693호
개정 2000. 02. 10 조례 제1722호
개정 2000. 05. 24 조례 제1752호
개정 2000. 09. 25 조례 제1773호
개정 2001. 07. 27 조례 제1839호
개정 2001. 11. 29 조례 제1857호
개정 2002. 04. 10 조례 제1872호
개정 2002. 05. 27 조례 제1887호
개정 2002. 08. 01 조례 제1890호
개정 2003. 04. 10 조례 제1925호
개정 2003. 06. 09 조례 제1942호
개정 2003. 08. 11 조례 제1964호
개정 2003. 11. 06 조례 제1983호
개정 2004. 01. 15 조례 제1995호
개정 2004. 06. 04 조례 제2020호
개정 2004. 08. 09 조례 제2028호
개정 2004. 11. 11 조례 제2042호
개정 2005. 01. 13 조례 제2051호
개정 2005. 02. 04 조례 제2067호
개정 2005. 04. 14 조례 제2072호
개정 2005. 06. 10 조례 제2088호
개정 2005. 08. 05 조례 제2098호
개정 2006. 04. 07 조례 제2141호
개정 2006. 11. 06 조례 제2182호
개정 2007. 01. 09 조례 제2194호
개정 2007. 06. 18 조례 제2229호
개정 2007. 11. 15 조례 제225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11.15 >

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1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4.07>

1. 집행기관의 정원 : 2,069명<개정 2007.01.09>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31명<개정 2007.01.09>

제3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5.04.14>

제4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04.14>

부칙<1999. 9. 8 조례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982명
1.집행기관의 정원	1,958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913명
1.집행기관의 정원	1,889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②제1항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1」,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부칙<1999. 12. 1 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구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2,008명
1.집행기관의 정원	1,984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939명
1.집행기관의 정원	1,915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②제1항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1」,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부칙<2000. 2. 10. 조례 제1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6월 30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2,015명
1.집행기관의 정원	1,991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946명
1.집행기관의 정원	1,922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②제1항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1」,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②복식부기 7명은 한시정원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칙<2000. 5. 24. 조례 제1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6월 30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구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2,033명
1.집행기관의 정원	2,009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964명
1.집행기관의 정원	1,940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②제1항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1」,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②복식부기 7명은 한시정원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칙<2000. 9. 25. 조례 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일반직 31(5급:1, 6급:2, 7급:10, 8급:18), 기능직 41(7급:5, 8급:11, 9급:10, 10급:1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표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964명
1.집행기관의 정원	1,939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897명
1.집행기관의 정원	1,872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②제1항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8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삭제

② 삭제<2005.08.05>

부칙<2001. 11. 29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14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0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27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 1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 10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6. 9.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11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6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01. 15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4 조례 제20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5.08.05>

부칙 (2004.08.09 조례 제20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5.08.05>

부칙 (2004.11.11 조례 제20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5.08.05>

부칙 (2004.01.13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2.04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07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06.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8.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